

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1. 발의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2022년 3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및 자구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관련 조례 4건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

- 가.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(안 제1조, 제5조)
- 나.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- 다.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- 라.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조례의 인용 조문만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하여 명료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